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「기업정리 절차」 개정

- (내용)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 회사정리와 화의제도를 악용해 파산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 시행하기로 함
 - 향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2월 중으로 회사정리법, 화의법, 파산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
 - 이후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

< 기업정리 절차 개선방안 주요 내용 >

구 분	내 용
부실기업 처리 1심 종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실기업의 회사정리 절차나 화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파산 절차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
기업정리 절차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정리나 화의를 신청한 후 법정관리나 화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
조사위원 상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: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간 후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선임 - 개정: 조사위원을 상설화해 채권 평가, 정리계획안 평가 등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
회사정리를 위한 의사결정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: 정리대상 회사의 담보권자의 4/5가 동의해야 정리계획안 가결 - 개정 : 3/4로 완화

- (평가) 부실기업이 도산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나,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임
 - 기존의 재심사 제도나 시간적인 여유의 부여 등과 관련, 일부 부실기업이 파산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불공정하게 채권을 배분하는 등 악용한 부분도 있음
 - 그러나 뛰어난 경영능력과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도산한 기업들에게는 소생 기회를 제공한 경우도 있음
 - 이번 정부의 계획(안)은 절차의 간소화에 치중되어 있고, 평가 기능의 강화 내용은 빈약한 편이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성이 있음
- (보완 과제)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처리 절차의 간소화에 상응하는 평가 기능의 고도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함
 - 법원의 회사정리나 화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채권은행과 평가기관이

참여하고, 해당 기업의 재기 가능성을 경영능력과 시장여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해야 할 것임

□ 정부 정책 동향 (1. 4~1. 10)

기업구조조정위원회(1.9): 워크아웃 추가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올 상반기 안에 6~64대 계열중 15개 가량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추가 선정(현재 16개 계열) - 구조조정을 잘하는 기업의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시 우대, 경영관리단 운영지침 마련 - 워크아웃 진행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재정경제부(1.9): 외화가변예치제도 등 외환 거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, 4월부터 시행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화가변예치제(VDR)의 예치이자율을 무이자로 하고, 예치비율과 기간 등은 환율, 국제수지 등을 감안해 결정 -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환전업무를 개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함
산업자원부·정부통신부(1.7):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, 7월부터 시행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통과된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하위법령을 6월까지 마련,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- 전자문서에 법적효력 부여,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도 기명날인·서명과 동일 효력 인정 등
공정거래위원회(1.7): 통신판매 표시·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가격 표기, 배달시간·사후반품 등 거래조건 미비, 불명확한 사업자정보 표시, 부가정보 이용료 미표시 등 제재 -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%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
건설교통부(1.6):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,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반기중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,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(2002년부터는 신고제) - 9월부터 연대보증제를 폐지, 신용보증제로 일원화 - 업종 구분(설계·감리·시공)을 건설업 하나로 통일 -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제를 상반기중 도입
재정경제부(1.6):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 및 적격심사에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을 40%로 상향(현재 30%) -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, 50억미만 소형공사는 재무상태비중을 50% 적용 -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 축소, 2000년에 폐지 - 입찰담합 제재 강화, 타당성조사 부실 기업도 제재
노동부(1.4): 실업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/4분기 고용유지지원금·채용장려금 최고 50% 상향, 지급기간 연장, 지급요건 완화 - 종업원인수기업 종업원 1인당 40~80만원 지원 계획

(민 주 흥 jhmin@hri.co.kr ☎ 724-4014)